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12. . (제 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12.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원 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용 및 탄소중립 관련 재정 정책 업무를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정원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정보시스템 및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재난 및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 및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이동형 수질측정차량을 활용한 현장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국립야생동물질

병관리원에 인천공항 휴대품 검역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 6명(6급 6명)을 각각 증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분장사무로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정하는 등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5호 중 “환경공간정보체계, 환경지식정보망의 구축·관리 등 환경정보화”를 “부 내 공간정보체계 및 지식정보망의 구축·관리 등 정보화”로 한다.

제9조제3항제19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 및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조정

26.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제1호 중 “자원순환 기본계획 등 자원순환 관련”을 “순환경제 기본계획 등 순환경제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폐기물”을 “순환경제”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폐기물 자원화”를 “순환경제”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15의3.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의 연구·개선

15의4.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15의5.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정책의 협의·조정

제16조제3항제18호 중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 및 제26호 중 “기후변화 대응”을 각각 “기후위기 적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 중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기후변화”를 “기후변화영향 평가와 기후위기”로 하고, 같은 항 제63호 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육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4호 및 제65호 중 “활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활용 지원”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2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2.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69조제2항 후단 중 “62명을”을 “64명을”로 한다.

제7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822”를 “839”로 하고, 일반직 계 “814”를 “83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72”를 “789”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중 총계 “1,832”를 “1,839”로 하고, 일반직 계 “1,832”를 “1,83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14”를 “1,821”로 한다.

별표 7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3항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00000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2일 당시 종전의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획재정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4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00000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총계	832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2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4
일반직 계	824
고위공무원단	22
3급 또는 4급 이하	782
전문직공무원	17
전문경력관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	제9조(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③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u>환경공간정보체계, 환경지식정보망의 구축·관리 등 환경정보화</u>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15. <u>부 내 공간정보체계 및 지식정보망의 구축·관리 등 정보화</u> ----- -----
16. ~ 18. (생략)	16.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u>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조정</u>
19. ~ 24. (생략)	20.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u>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u>
제14조(자원순환국) ①·② (생략)	제14조(자원순환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u>자원순환 기본계획 등 자원순환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1. <u>순환경제기본계획 등 순환경제 관련</u> ----- -----

2. 폐기물 분야 통계생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운영

3. ~ 14. (생략)

15. 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제16조(기후에너지정책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 1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6. ~ 17. (생략)

18.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 지원 제도·예산 운용

19. ~ 24. (생략)

25. 기후변화 대응 홍보 및 대외

2. 순환경제 -----

3. ~ 14. (현행과 같음)

15. 순환경제 -----

제16조(기후에너지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기후위기 -----

2. ~ 15. (현행과 같음)

15의2.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15의3.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의 연구·개선

15의4.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15의5.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정책의 협의·조정

16. ~ 17. (현행과 같음)

18. 기후위기 -----

19. ~ 24. (현행과 같음)

25. 기후위기 적응 -----

협력에 관한 사항	-----
26. <u>기후변화 대응</u>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26. <u>기후위기 적응</u> ----- ----- -----
27. <u>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u> · 시행에 관한 사항	27. <u>기후변화영향평가와 기후위기</u> ----- -----
28. ~ 62. (생략)	28. ~ 62. (현행과 같음)
63.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에너지산업 <u>육성</u> 에 관한 사항	63. ----- ----- <u>육성</u>
64. 기후·에너지산업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u>활용</u> 에 관한 사항	64. ----- ----- <u>활용 지원</u>
65. 기후·에너지산업에 대한 데이터 관련 기술 적용 및 <u>활</u> <u>용</u> 에 관한 사항	65. ----- ----- <u>활</u> <u>용 지원</u>
66. ~ 93. (생략)	66. ~ 93. (현행과 같음)
제17조(에너지전환정책실) ①·② (생략)	제17조(에너지전환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20. (생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u>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육</u> <u>성·지원</u> 에 관한 사항	<삭 제>
21. <u>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u>	<삭 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 한 사항

<신 설>

<신 설>

23. ~ 47. (생략)

제69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6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

21.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2.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

한 사항

23. ~ 47. (현행과 같음)

제69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64명을

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 -----.
제74조(한시정원) ① <u>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u> ②·③ (생략) ④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⑤ (생략)	제74조(한시정원)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2027년 12월 31일</u> ----- ----- -----. ⑤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6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22</u>	<u>839</u>	+17
•	•	•	
•	•	•	
일반직 계	<u>814</u>	<u>831</u>	+17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72</u>	<u>789</u>	+17
•	•	•	
•	•	•	

[별표 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832</u>	<u>1,839</u>	+7
일반직 계	<u>1,832</u>	<u>1,839</u>	+7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14</u>	<u>1,821</u>	+7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9